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142

발의연월일: 2022. 9. 1.

발 의 자:윤준병·김정호·김철민

김성환 · 양정숙 · 안규백

오영환 · 이상헌 · 신정훈

이용선 · 민형배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동제도는 2022년 말로 일몰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조합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제도는 농업인·서민 재산형성 지원을 통해 실질소득 증대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조합법인의 신용사업 기반 마련을 통한 농산물 유통 및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종래 농림어업인과 이들의 협동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의 감면·면제 혜택이 단기적으로 자주 일몰기한이 연장되는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정책대상집단의 불안과 불평이 반복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현 정부 임기 내내 농림어업인과 이 들의 협동조합법인에 대한 각종 조세 감면과 저율 과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조합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제도에 대하여 올해 2 022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 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3).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의3제1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4년 1월 1일"을 "2029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대하 저율과세 등) ① 농민ㆍ어민 저율과세 등) ①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 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 로서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 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에 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 12월 31일-----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 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 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 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 월 31일-----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 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 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 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 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u>2024년 1월 1일</u> 이후 조합
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
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1. 2. (생략)
- ② ~ ⑧ (생 략)

② 2029년 1월 1일
1.・2.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